사전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

2023.5.9.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

금융투자업규정 [개정]

1 시청사유 (자본시장과, 2023.5.2.)

- (개정내용)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도 폐지, 외국인 상장증권 장외거래 사후신고 항목 확대 및 통합계좌의 최종투자자 거래내역 즉시 보고의무 폐지
- (신청사항)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6월까지 규정 개정을 완료할 필요성이 있어, 행정예고기간을 20일로 단축할 필요
 - 외국인ID 폐지 등은 증권사 거래원장 수정, 유관기관 시스템 개편 등 대규모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(6개월 이상 소요 예상)
 - 연내 시행^{*}을 위해서는 증권사 등이 전산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신속히 규정개정을 완료^{**}하여 시장에 안내해야 하는 상황
 - *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발표1.25일시 연내 시행 계획을 밝힌(23년 금융위 업무계획 포함)
 - ** 본격적인 전산개발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내용이 확정될 필요

2 | 검토 내용

- 신속하게 전산개발에 착수하여 **차질 없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이행**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, 사전예고기간 단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
 - ※「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」제20조등에 따라 **금융위 규정변경은 40일** 이상 사전예고가 원칙이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, 생략·단축도 가능(동 규정 제20조제3항)

3 처리 의견

○ **사전예고 기간** : '23.5.10일~5.30일 (20일간)